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92
----------	-----

발의연월일 : 2009. 9. 28.

발 의 자 : 최만용·한도섭 의원
(찬성자 8인)

제안이유

- 영세상인 등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정용 이외의 동일건물 내 영업용, 업무용, 옥탕용에도 사용주체가 다를 경우 계량기 분리설치를 허용하고자 함.

주요내용

- 2호이상 공동주택 및 상가점포에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각호별, 각 점포별 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함.(안 제14조)

참고사항

- 관련조례 검토와 발취사항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시설분담금)”을“(계량기 및 시설분담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동주택”을 “공동주택 및 상가점포”로, “검침하거나 각호별료”를 “검침하거나 각호별, 점포별료”로, “시설분담금은 각호별료”를 “시설분담금은 각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호별, 점포별 계량기를 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다.

제29조제2항 중 “보조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보조계량기를 설치하거나”를 “보조계량기를 설치하거나”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관련 조례 검토와 발췌사항

<p>관련조례 및 시행규칙</p>	<p><input type="checkbox"/>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p> <p>○ 제14조(시설부담금) ② 2호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단일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 제1항의 시설부담금은 각호별로 구분 산정한다.</p> <p>○ 제29조(업종의 구분)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조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보조계량기를 설치하거나 별도의 급·배수관에서 급수설비를 설치한 후 따로 조정할 수 있다.</p> <p><input type="checkbox"/>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시행규칙</p> <p>○ 제9조 (별도 계량기 등 설치) ② 공동주택복합건물의 경우에는 주택이 아닌 다른 업종에 별도계량기를 설치한 후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도계량기 또는 보조계량기의 설치 승인은 배관시설이 완전 분리되어 각각의 사용량 구분이 가능하고 업종이 다른 경우에 승인한다. 이 경우 급수공사비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다.</p>
----------------------------	--